

교직원보수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법인정관 제43조 제4항 제2호 및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보수” 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의 합산금액을 말한다.
- ② “봉급” 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③ “수당” 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④ “일할계산” 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⑤ “평균보수” 라 함은 연간 총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된 것을 말한다.

제 2 장 봉 급

제3조 (봉급) ① 정년제 전임교원과 정규직원의 봉급월액은 당해 연도 공무원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제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계약교원과 무기계약직원, 비정규직원, 조교의 봉급월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봉급 제수당을 합한 보수월액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사회 의결을 얻어 따로 정한다.

④ 계약제 전임교원의 봉급월액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교원의 전담임무를 고려하여 정하되, 전담임무에 따른 업무의 내용 및 경중, 근무조건, 학력 등의 임용자격, 다른 교원과의 처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4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제5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 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삭제>

③ 정년제 전임교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육공무원 경력연수가감 및 기산호봉 기준을 적용하여 획정하되 교육 및 연구경력, 기타 유사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기준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를 합산한다.

-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⑤ 계약제 전임교원의 초임호봉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획정하되, 교육 및 연구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전담임무에 부합하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교육 및 연구경력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⑥ 당해 교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한다.
- ⑦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에 따라 획정하며 잔여기간 등은 제4항에 따른다.

제6조 (정기승급) ①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교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직원은 승급제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달에 승급한다.
- ④ 직원 승진 시 승진된 급에서의 호봉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제7조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당해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에 있는 자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개월
 - 감봉 : 12개월
 - 견책 : 6개월

- 3.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 등급에 해당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 받은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교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승진소요연수가 경과되었음에도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당해 재임용 발령일로부터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호봉승급의 제한은 당해 교원의 승진임용이 이루어지면 승진임용 발령일로부터 해제된다. 단, 호봉승급이 다시 이루어지더라도 호봉승급이 중지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지는 않는다.

제8조 (승급기간의 특례) 제7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삽입한다.

-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
- 2.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승인에 의한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와 규정에 의한 연구년 기간

제9조 (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확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의 호봉의 정정은 해당 교직원의 현재의 호봉 확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확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 4 장 보수지급

제10조 (보수지급 계산기간) 보수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2조 (보수계산) ①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승진과 감봉의 경우에는 발령일부터 실시하고 보수기준 개정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한다.

③ 2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는 면직 직전일까지 일할계산하되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월중에 면직하게 되는 경우는 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일할계산한다.

④ 시보기간 중에도 정규직원과 동등한 보수를 지급한다.

⑤ 상여수당, 정근수당은 지급계산기간의 1/2 이상을 근무한 자에는 전액을, 1/2 미만을 근무한 자에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⑥ 정근수당과 상여금의 지급액 계산 기간은 1년(12개월)을 지급횟수로 나눈 기간을 각각 지급액 계산기간으로 한다.

⑦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차등 지급액 계산방법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한 계산방법에 따른다.

⑧ 상여수당, 정근수당의 지급시기는 지급액 계산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⑨ 상여금, 정근수당의 지급횟수와 지급시기는 따로 정한다.

⑩ (삭제)

⑪ 결근에 따른 보수지급은 당해월 평균보수에 결근일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당해월 평균보수는 당해월 총보수를 일수로 나눈 금액임.)

제13조 (연구교수의 보수지급) <삭제>

제14조 (휴직기간 또는 해외파견 중의 처우) ① 정관 제44조(휴직의 사유) 제1호(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의 규정에 따라 휴직된 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정관 제44조 제5호(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에 따라 휴직 또는 해외 파견된 교원에 대하여는 1년에 한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단, 본교에 복귀하여 그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령분을 반환한다.

제15조 (직위해제 기간 중의 처우)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 및 연구보조비(교수), 연구지원수당(직원)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

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도 봉급 및 연구보조비(교수), 연구지원수당(직원)의 5할을 지급한다.

제 5 장 수 당

제16조 (적용범위)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각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협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에 대하여 예산의 뒷받침이 안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겸임수당) ① 교직원이 본직 외에 다른 직에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따로 정한다.

② 교직원이 두 개 이상의 직책을 맡은 경우 직책수당은 그 중 가장 금액이 높은 수당 하나를 지급한다.

제19조 (각종수당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수당의 지급범위는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가족수당
4. (삭제)
5. 정근수당
6. (삭제)
7. (삭제)
8. 특수업무수당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자녀학비보조수당
14. (삭제)
15. (삭제)
16. 명절휴가비

② 다음 각호의 수당의 지급방법·지급범위·지급액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따로 정한다.

1. 상여금
2. 교원 연구비
3. 학생지도비

4. 보직수당
5. (삭제)
6. 교육조교 및 일반직원의 연구지원수당
7. 교육조교의 생활교육수당 및 업무보조수당과 학사조교의 업무보조수당
8. 시간외근무수당
9. (삭제)
10. 야간근무수당
11. 휴일근무수당
12. 급량비
13. 교과지도비
14. 직책수당
15. 장기근속수당
16. 직급보조수당
17. 초과근무수당
18. 업무지원수당
19. 관리업무수당
20. 특별업무지원수당
21. 연구보조비
22. 기타수당
23. 임시수당

③ 제2항 1호부터 23호까지 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8은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 제2항 10은 주야 교체 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제2항 11은 주야 교체 근무자로서 국경일·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2항 11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일직수당을 제2항 10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숙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3의 가족수당은 부양의무자의 증명을 제출한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부양가족의 증감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책임은 신고 의무자에게 있으며, 동일가족이 2인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 의무자에게만 지급한다.

⑦ 제1항 8호는 해당업무 담당자 또는 기술자격증소지자에게만 지급한다.

⑧ <삭제>

⑨ 2개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더라도 직책수당은 최상위 직책 1개에 한하여 지급하며, 직책은 법인 산하 모든 기관의 직책에도 적용된다.

⑩ 아동연구원장의 급량비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지급한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원이 법인 산하 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산하 기관에서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20조 (개인부담금)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 등 각종 개인부담금을 부담지급 할 수 없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3)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①항 5,6,7호 신설, 제19조 ①항 1호 삭제)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제14조 ①항, ②항 제15조 개정 <'94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④항, 제3조, 제12조 ⑩항 신설, 제13조 ①항, 제19조 개정 <'97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9조 ⑧신설 <'99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⑩항 삭제 <'02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제4항 개정 <'05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항 개정 <'05 제2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5조제1항 개정, 동조제2항

- 삭제, 동조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2012 제4차 교무위원회>)
- 제2조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12.2.28.)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2012년 7월 22일 당시 조교수(B)로 재직 중인 자는 그 직위의 변동시점에 상관 없이 최초로 재임용되는 날에 호봉을 재확정한다.
- ② 2012년 3월 1일에 조교수(B)로 임용되었으나 종전 공무원보수규정의 전임강사 기준을 적용받은 자는 최초로 재임용되는 날에 호봉을 재확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조제4항 동조제5항 개정, 제3조제1항 개정, 제5조제7항 신설, 제6조제2항 개정, 동조제4항 신설, 제7조제1호, 제8조제3호, 제12조제3항,6항,9항 개정, 제13조 삭제, 제14조제1항, 동조제2항 개정, 제18조제2항 신설, 제19조 개정, 제20조 신설, 별표1, 별표2 신설 <2013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제3항,제4항 추가 <2014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9조제2항,제3항 개정 <2014 제1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5조제5항 개정, 제3조제4항 신설 <2015 제3차 교무위원회>)

[별표1] 근무경력인정기준

구분	채용 전 근무 경력(기간) 내용	인정기준	
기본 경력	사립대학교 근무 경력	정규직	100%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근무 경력	정규계약직 및 비정규직	50%
	군복무 경력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유사 경력	기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에 명시된 전문, 특수근무 산정 경력		

[별표2] 승진에 따른 호봉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1	1	12	11	23	22
2	1	13	12	24	23
3	2	14	13	25	24
4	3	15	14	26	25
5	4	16	15	27	26
6	5	17	16	28	27
7	6	18	17	29	28
8	7	19	18	30	29
9	8	20	19	31	30
10	9	21	20	32	31
11	10	22	21		